

2020년도 제3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2. 23.(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728건(안건번호 제2020-168463호~171220호)
 - 회의결과: 제2020-168463호~168474호는 네이버 블로그에 인터넷 소셜 텍스트 파일,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상과 자막 파일 등을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다만, 안건번호 제2020-16846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삭제되어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68475호~16848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70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106건(안건번호 제2020-3734호~3839호)

- 회의결과: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06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52개 안전(52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을 부결함.

o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8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전번호 제2020-54826호~5500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총 18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오진해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6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72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68463호~17122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8463

호~168474호는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총 13건의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0-168463호는 네이버 이용자 ‘☆☆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35개의 인터넷 소설을 블로그에 텍스트 파일로 게시한 사안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들은 “☆☆ ☆☆ ☆☆☆ ☆☆☆☆☆☆☆☆☆☆☆ ☆☆☆”이라는 제목으로 2019. 10. 23.에 게시됨.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는 “☆☆ ☆☆☆☆ ☆☆ ☆☆ ☆☆ ☆☆☆☆☆☆☆☆☆☆☆☆☆ ☆☆☆☆☆”, “☆☆☆ ☆☆☆☆ ☆☆☆☆☆ ☆☆☆ ☆☆☆ ☆☆☆☆☆ ☆☆☆ ☆☆☆☆☆ ☆☆☆ ☆☆☆☆☆”라고 안내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텍스트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비밀 댓글로 블로그 운영자가 요청한 사항을 남기면 소설의 텍스트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비밀번호 ‘☆☆☆☆’를 대댓글로 알려주는 것으로 보임. 게시물 하단에는 공감 490건, 댓글이 763건 달려 있음.

- C 위원: 인터넷 소설의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각 작가로 보여짐. 심의대상 게시물 중 시장에 출판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음. 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총 35개의 인터넷 소설 목록과 작가명을 검토보고서상에 정리해 두었음.
- B 위원: 출판된 책을 스캔하여 업로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 소설 플랫폼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사이트에 재업로드 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35개 인터넷 소설 중에 심의 안전으로 특정된 저작물의 경우 2012년에 책으로는 최초 출간됨. 인터넷 소설은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에 연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저작물을 모아 해당 블로그에 게시하였는지, 게시한 소설이 연재본인지 출판본인지 알 수는 없음.
- B 위원: 네이버 유료서비스 중에 웹소설을 한 화당 100원에 판매하는 서비스가 있음. 네이버에서 웹툰을 다운로드 받듯이 해당 소설도 다운로드 받아 재업로드 했었을 수도 있다고 봄.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알 수 없음.
안전번호 제2020-168464호~168469호는 네이버 블로거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 ‘☆☆☆ ☆☆☆☆ ☆☆☆’, ‘☆☆☆ ☆☆☆☆☆☆’, ‘☆☆☆ ☆☆’의 영상물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또는 자막 없이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순번 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재생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78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 화 전체 분량인 23분 54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회당 500원에 대여 가능함.
(순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비공개 글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78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 화 전체 분량인 23분 54초를 전송하고 있음. 채증자료 우측 블로그 소개를 보면 “☆☆☆☆☆☆☆☆ ☆☆ ☆ ☆☆☆ ☆, ☆☆☆ ☆☆☆ ☆☆☆☆☆☆☆”라고 안내하고 있음.

(순번 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재생하면서)해당 저작물의 28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 화 전체 분량인 24분 20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회당 770원에 대여 가능함.

(순번 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입니다"고 안내하고 있어,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전송 중단된 상태로 보여짐.

안전번호 제2020-168463호~168469호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제2020-168466호는 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공개글로 전환될 수 있어 시정권고의 가결로 검토하였음. 제2020-168469호는 현재 전송 중단된 상태이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안전번호 제2020-168470호~168474호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 '☆☆☆☆☆☆☆☆☆☆'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 ☆☆☆ ☆☆☆☆☆☆☆', '☆☆ ☆☆☆☆☆ ☆☆ ☆☆ ☆☆ ☆ ☆☆☆', '☆☆☆☆☆☆ ☆☆ ☆☆☆☆☆☆☆☆☆☆☆☆☆!', '☆☆☆☆☆☆☆☆ - ☆☆☆☆☆☆☆☆☆'의 자막 파일을 블로그에 올린 사안임.

(순번 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직접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는 포스터 1장과, 하단에는 23화 smi 자막 파일이 게시되어 있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화당 770원에 대여, 1,500원에 구매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자막파일을 텍스트파일로 변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싱크가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순번 1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직접 보여주면서)심의

대상 게시물 본문에는 포스터 1장과, 하단에는 12화 smi 자막 파일이 게시되어 있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화당 700원에 대여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순번 8번과 마찬가지로 싱크가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일본 애니메이션 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 파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하는 행위는 애니메이션 대본(어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함.

우선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음. 원 저작물 전체 분량의 자막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유(Appropriation)형'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보다는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임.

공정이용 판단의 제1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해 살펴보겠음. 게시자가 비상업적으로 자막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사정은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나, 비영리적 목적이라고 하여 공정이용이 되는 것은 아님. 생산적(productive) 또는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은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변형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게다가 인용, 패러디의 경우를 제외하고 2차적저작물작성에 관한 시장도 저작물에 대한 통상의 시장이 될 수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을 쉽게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정이용 판단의 제2요소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해 살펴보겠음. 본 건 자막파일의 원저작물인 대본은 사실적·정보적 성격의 저작물이라기보다 창조적인 성격의 저작물이라고 할 것임. 이 점은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공정이용 판단의 제3요소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겠음. 본 건 자막파일이 이용한 저

작물은 저작물 전체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이는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공정이용 판단의 제4요소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겠음. 우리말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보완재 관계에 있고 영상과 결합한 후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게 됨. 즉 본 건 자막파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됨. 본 건 자막파일이 합법 저작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정은 공정이용 인정에 매우 불리한 요소임.

요컨대 우리말로 번역한 자막은 외국어로 된 대본(원저작물)를 변형(변용)적(transformative)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함. 즉 우리말로 번역한 자막파일의 무단 제공은 외국어로 된 대본(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참고로 호주 연방법원은 2018. 12. 20. 일본 애니메이션 대본을 영어로 번역한 자막파일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가 어문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Amsterdam District Court)는 2017. 4. 19.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막을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스웨덴 항소법원(Svea Court of Appeal)은 2018. 2. 23. 자막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법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하급심의 저작권 침해 유죄 판결을 확정함. 스웨덴 항소법원은 번역된 자막을 새롭고 독립적인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노르웨이 지방법원(South Trøndelag County Court)은 2012. 자막 파일 제공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부과한 바 있음.

한편 우리말로 번역한 자막파일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함. 대법원은 “원저작물인 ‘라파예트’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삽입하여 ‘라파예트’ dvd(이하 ‘이 사건 dvd’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dvd는 공소의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공소의 1 주식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즉 우리말 번역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무단 번역한 우리말 자막도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로서는 자막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고의성 여부(smi 파일, srt파일로 배포되는 자막파일은 특정 불법영상물을 전제로 하여 음성과 자막을 싱크하므로 침해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사이트의 영리적 목적 여부(배너광고, 기부 등의 수익 행위), 자막 제공자의 사건 외 자막 배포의 규모(이에 대해, 심의대상 자막만을 시정권고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사건 외 자막파일들의 배포 규모는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가 있음), 심의대상 자막파일이 교육용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판매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음.

반면, 시정권고의 소극적 요소로서는 한글 자막 제작은 원본 DVD,

블루레이 자체에서 제공한 번역 자막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닌 한, 번역자의 창작적 개성이 나타나는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이라는 점(그러므로 심의대상 자막파일이 원본 DVD 등이 제공하는 자막인지 여부도 조사되어야 함), 아직 영상물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아 한글 자막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물의 팬이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번역한 경우일 수 있다는 점(반대로 국내 수요가 충분하여 국내 정식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 이러한 사정은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가 될 것임), 권리자측이 특별한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서 권리자가 아닌 제3자 민원인이 신고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각 본문에 “☆ ☆☆☆ ☆☆☆”, “☆ ☆☆☆ ☆☆☆☆☆”, “☆ ☆☆☆ ☆☆☆☆”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게시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우리말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보완재 관계에 있고 영상과 결합한 후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게 되는 점, 자막파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본 건 복제·전송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수, 특이사항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68463

호~16847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다만, 제2020-168469호의 경우 현재 전송 중단된 상태이므로 경고의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A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단, 순번 7번의 경우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순번 7번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점을 고려하여 경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8469호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68463호~168468호, 제2020-168470호~16847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8475호~168486호는 6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총 12개의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화 ‘☆☆☆
☆☆☆☆’, 출판 ‘☆☆ ☆ ☆☆☆ ☆☆☆’을 무료 내지 150 포인트에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순번 15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43화, 번외편을 무료로 제공함. jpg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
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화당 100원 구매 가능함.

(순번 16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80화를 20 포인트에 판매중임.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
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단행본으로 권당 8,550원 구매 가능함.

이미지 내에 “☆☆ ☆☆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임.

(순번 17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을
mp4 파일로 150 포인트에 판매중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000원에 구매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
수, 특이사항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

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68475호~16848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A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8475호~1684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68487호~17122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4,70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

물, 소프트웨어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더 위치스'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0087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더 위치스'를 177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의 영상물과 함께 자체 자막도 제공하고 있음. 워너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구독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에서 10. 22.에 게시되었으며, 현재 국내 미개봉작임.

(방송 '경이로운 소문'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024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경이로운 소문'을 13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2020. 12. 12., 13.에 방영한 5화, 6화를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OCN에서 2020. 11. 28.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화당 1,650원에 대여 가능함.

(영화 '테넷'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7117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테넷'을 1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0. 8. 26.에 개봉하여 현재 극장 상영중임. 해당 영화는 VOD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0. 12. 15.에 Blu-ray를 출시함.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900원에 구매 가능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68487호~17122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B,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68487호~171220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8487호~17122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8469호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68463호~168468호, 제2020-168470호~171220호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6쪽부터 2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34호~3839호 106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06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52개 안전(52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o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3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25쪽부터 3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4826호~55005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3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28.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